

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2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- 가.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,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나.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‘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함.
- 나. 사장, 이사,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0조,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)
- 다.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,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,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,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신설함.(안 제 19조)
- 라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변경함

□ 참고자료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”를 “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교통공사(이하 “교통공사”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 49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사”를 “인천교통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,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”를 “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1년 단위로”로,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0조의3제1항 중 “예산부서의 장”을 “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”으로, “2인 이내로”를 “100분의 50미만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한다.

제12조 각 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·제4항·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여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
8.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
9.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
10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

제26조 제목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리계리”를 “분리하여 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제1항·제28조제1항제3호·제35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 규정에 의거 <u>인천교통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</u>를 설치하여 교통관련사업등의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법인격)<u>공사</u>는 법인으로 한다</p> <p>제10조(임원)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<u>이사</u>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, <u>이사</u> 및 <u>감사</u>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<u>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<u>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0조의2(사장)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<u>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에서</u>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② ~ ③(생략)</p>	<p><u>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<u>인천교통공사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법인격)<u>인천교통공사(이하“공사”라 한다)</u>-----</p> <p>제10조(임원)-----<u>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)</u> 및 <u>감사</u>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u>1년 단위로</u>-----</p> <p>---<u>다만,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10조의2(사장)①-----</p> <p>----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<u>임원추천위원회</u> -----</p> <p><u>다만, 제10조제2항에 따라</u>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<u>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</u>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의3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, 비상임 이사는 시의 공사감독부서의 장, 예산부서의 장등을 포함하고,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의3(이사) ① ----- ----- --<u>공기업 총괄담당 부서의 장</u>----- ----- -----100분의 50미 만으로-----</p> <p>② <u>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의4(감사) ① <u>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의4(감사) ① <u>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<u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u></p>	<p>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</p>
<p>제17조(이사회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 <u>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<u>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<u>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7조(이사회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사업)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 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 <신설></p> <p>7. 기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</p>	<p>제19조(사업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</p> <p>8.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</p> <p>9.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</p> <p>10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</p> <p>11. 그 밖에 ----- -----</p>
<p>제20조 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.</p>	<p>제20조 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----- -----<u>그 밖의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26조(계리의 원칙)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한다.</p> <p>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.</p>	<p>제26조(회계처리-----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회계처리</u>-----</p> <p>② ----- <u>분리</u> <u>하여 회계처리</u>----- -----</p>
<p>제28조(지방비의 부담)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8조(지방비의 부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5조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37조 (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, 영, 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.</u></p>	<p>제35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제37조 (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방공기업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9조(설립) ○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○ 제59조(임기 및 직무) 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5조(이사) ○ 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“별첨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 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지방공기업법

제49조(설립)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·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
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55조 (이사)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

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

제56조의3 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
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